

제22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7.2.27.)

# 조례안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준옥]

# 목 차

1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1
2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3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4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5	2017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25

#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17. 2. 13.

나. 발 의 자: 표주숙 의원 대표발의(이성복, 강철우, 변상원, 박희순의원)

다. 회부일자: 2017. 2. 16.

## 2. 제정이유

- 최근 핵가족화와 배우자 사별, 고령화 등으로 홀로 사는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노인 고독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노후관리에 대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고독사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고독사 예방 지원대상자 및 지원사업 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 나. 예산조치: 연간 134백만원
- 다. 합 의: 기획감사실, 복지정책과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2. 13. ~ 2. 18.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별첨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가. 복지에 관한 책무는 「노인복지법」과 「지방자치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 나. 복지정책에 있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다툼이 있지만 장단점이 있으므로 장점을 살려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며
- 다. 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도 있지만 핵가족화와 고령화로 홀로 사는 노인이 매년 증가하여 고독사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현 시점에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라.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 관련법령 발췌

#### □ 「노인복지법」

[시행 2016.12.30.] [법률 제13646호, 2015.12.29., 일부개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카. (생략)

####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6.(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2. 15.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2. 16.

## 2. 제정이유

- 채무제로 성과를 바탕으로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연도 간 재원의 조정을 통한 군 재정 운영의 지속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적립금의 재원(안 제2조)

- 일반회계 출연금(지방세,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 보통교부세 3년평균 초과분), 적립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나. 적립금의 조성(안 제3조)

-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증가율을 10퍼센트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
-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퍼센트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
- 조정교부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

- 보통교부세가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

#### 다. 적립금의 사용(안 제4조)

- 사용요건: 세입감소, 긴급한 필요
  - 한 회계연도 사용할 수 있는 한도(적립총액의 50퍼센트)
- 사용용도
  - 급격한 세입감소로 인한 부족재원 충당
  -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
  - 긴급한 대규모 사업비 등

#### 라.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안 제6조~제9조)

- 위원장 부군수, 8명 이내 구성

#### 마. 적립금의 존속기한(안 제10조)

- 2021년 12월 31일까지(5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5년간 100억원 목표, 매년 20억원 적립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1. 23. ~ 2. 1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경남도내 조례 현황

- 제정완료(2): 경남도, 고성군
- 입법예고(10): 양산, 창녕, 남해, 밀양, 의령, 산청, 합천, 함양, 함안, 하동

## 5. 검토의견

- 가.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어려운 시점에 국가와 지방재정 위기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적립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 나. 조례제정 이후 적립금이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7.1.1.] [법률 제13428호, 2015.7.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11.30.] [대통령령 제27621호, 2016.11.29., 타법개정]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0.> [제목개정 2015.12.10.]

##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44호, 2016.12.20., 일부개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2698호, 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3조~제10조 (생략)

※**법제처 검토의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내용을 단순 재기재한 것으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조례에 명시하지 않도록 함.

#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제3조제1항 관련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으로 적립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 2. 비용추계의 결과

#### 가. 추계의 전제: 2015년도 결산기준

- 일반회계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보통교부세가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억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총 비용(a - b)		0	0	0	0	0	0
세출	적립금	20	20	20	20	20	100
	소계(a)	20	20	20	20	20	100
세입	출연금	20	20	20	20	20	100
	소계(b)	20	20	20	20	20	100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2. 15.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2. 16.

## 2.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위임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 아동위원회의 아동위원 정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근거조문 변경정(안 제1조)
  - 「아동복지법」 제6조 ⇒ 「아동복지법」 제14조
- 나. 읍·면의 인구에 따른 공정한 아동위원 수를 정함(안 제3조)
  - 읍·면별 2명으로 하되, 읍은 인구 1만명 초과 5천명당 1명을 추가할 수 있음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14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6. 12. 29. ~ '17. 1. 19.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5) 도내 개정현황

- 개정완료(13): 창원, 김해, 진주, 통영, 사천, 밀양, 산청, 남해, 의령, 창녕, 하동, 함안, 함천

## 5. 검토의견

- 가.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 나.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아동복지법」

[시행 2016.9.23.] [법률 제14085호, 2016.3.22.,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2016.3.22.>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①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전담공무원은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확인 및 지도·감독 등 지역 단위에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3.22.>

**제14조(아동위원)** ①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44호, 2016.12.20., 일부개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2698호, 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3조~제10조 (생략)

※**법제처 검토의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내용을 단순 재기재한 것으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조례에 명시하지 않도록 함.

#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2. 15.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2. 16.

## 2. 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구역의 표시와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로 중복 기재한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 받지 않은 내용을 규칙으로 재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그 위법성을 바로잡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금연구역 표시 규정 삭제함(안 제6조)

- 금연구역의 표시 기준이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은 보건복지부령(별표 2)에 규정되어 있고 조례로 위임한 바 없으므로 삭제
- 조례로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규칙으로 재위임하는 규정 삭제

### 나. 흡연구역 등의 설치규정 삭제함(안 제7조)

- 흡연실 설치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별표 2)에 규정되어 있고 조례로 위임한 바 없으며, 소유자 등에게 흡연실 설치 시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법령위임 없이 조례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함(「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

○ 위임받지 않은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 함에 따라 발생하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문제 해소(흡연구역 ⇒ 흡연실)위해 삭제

○ 위임받지 않은 내용을 규칙으로 재위임하는 법령위반 규정 삭제

#### 다. 과태료 규정 정비함(안 제10조)

○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령위반 소지를 없앴

-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 5 제2호라목2

- 위임내용: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에만 10만원의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6항, 제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별표 5

나. 예산조치: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1. 24. ~ 2. 1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반영함(안 제8조제1항·제2항)

(6) 전국 개정현황

○ 완료(11): 인천중구, 광주북구, 울산동구, 평택, 양평, 정읍, 화순, 나주, 청송, 구미, 영덕

## 5. 검토의견

- 가.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금연 구역 표시와 흡연구역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중복됨으로 실효성이 없고
- 나. 또한,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에서 규칙으로 재위임하는 규정은 위법하므로 개정이 타당하며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6.12.23.] [법률 제13363호, 2015.6.22., 일부개정]

####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6.7.>

②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9., 2008.2.29., 2010.1.18.>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2014.1.21.>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
- ⑥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2016.3.2.>
- ⑦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27., 2016.3.2.>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2.8., 2002.1.19., 2011.6.7.>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자
4.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삭제 <2011.6.7.>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9조제7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5.27., 2016.3.2.>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 2016.12.23.] [대통령령 제27238호, 2016.6.21., 일부개정]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2. 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3. 법 제34조제2항제3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4. 법 제34조제3항(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해당 금연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별표 5] <개정 2012.12.7>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1호	170	330	500
나.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제1호	75	150	300
다.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2호	170	330	500
라. 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34조 제3항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	10	10
2) 법 제9조제5항(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마.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	법 제34조 제1항제3호	170	330	500

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바.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4호	170	330	500
사.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제3호	75	150	300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6.9.3.] [보건복지부령 제438호, 2016.9.2., 일부개정]

**제6조(금연구역 등)** ① 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영업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1.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3.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② 법 제9조제4항제2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란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2.12.7.]

[별표 2] <개정 2012.12.7> [시행일:2015.1.1] 제2호다목4)의 개정규정(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에 설치하는 흡연실에만 해당한다)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제6조제3항 관련)

#### 1.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

##### 가. 표지 부착

- 1)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2)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한다.
- 3)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나. 표지 내용

1) 각 목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예시)

	금 연 건 물	<건물>
	금 연 시 설	<시설>
	금 연	<그 밖의 경우>

나) 위반시 조치사항

(예시)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4) 필요한 경우 표지판 또는 스티커 하단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전화번호 〇〇〇 - 〇〇〇〇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가. 흡연실의 설치 위치

- 1) 법 제9조제4항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이용자 및 어린이·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1)에 따른 시설 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나. 흡연실의 표지 부착

- 1)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 예시와 같이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예시)

- 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4)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다. 흡연실의 설치 방법

- 1)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2)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4)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11.7.6.] [법률 제10544호, 2011.4.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2.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3.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4조(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①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③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지방자치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제4조에 따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4.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를 준용한다.

**제6조 <삭 제>**

**제7조 <삭 제>**

**제8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운영하고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 단체 등을 표창 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군수는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자단체를 홍보요원으로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서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7. 2. 15.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7. 2. 16.

## 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부지대부 및 매각, 매입)

### 가. 구)서흥여객 부지 대부 및 매각계획

#### 1) 제안이유

구)서흥여객 부지는 강남권의 교통, 주거, 상업의 요충지로서 강·남북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지 내 관광호텔을 유치하고자 함.

####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버스터미널(시외+ 시내) 이전으로 교환, 취득한 구)서흥여객 부지를 강북과 균형발전을 위한 강남권 요충지로서의 개발 필요
- 군민설명회 개최 후 관광호텔 유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관광호텔 투자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필요

### 3) 처분개요

-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350외 1필지
- 면 적: 2,435m<sup>2</sup>
- 대부 (사업) 기간: 2017년 4월 ~ 2020년 3월
- 처분시기: 대부기간 만료 시(관광호텔 준공 후)
- 재산처분 내용

(단위:m<sup>2</sup>, 원)

구분	재산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매각시기	매각사유
		소 재 지	지목	면 적			
계		2필지		2,435	1,278,923,700		
매각	토지	거창읍 김천리 350	대지	2,128	1,238,921,600	대부기간 만료 시	관광호텔 유치
매각	토지	거창읍 김천리 119-2	잡종지	307	40,002,100		

# 위치도 및 전경사진

□ 위치도 -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350번지의 1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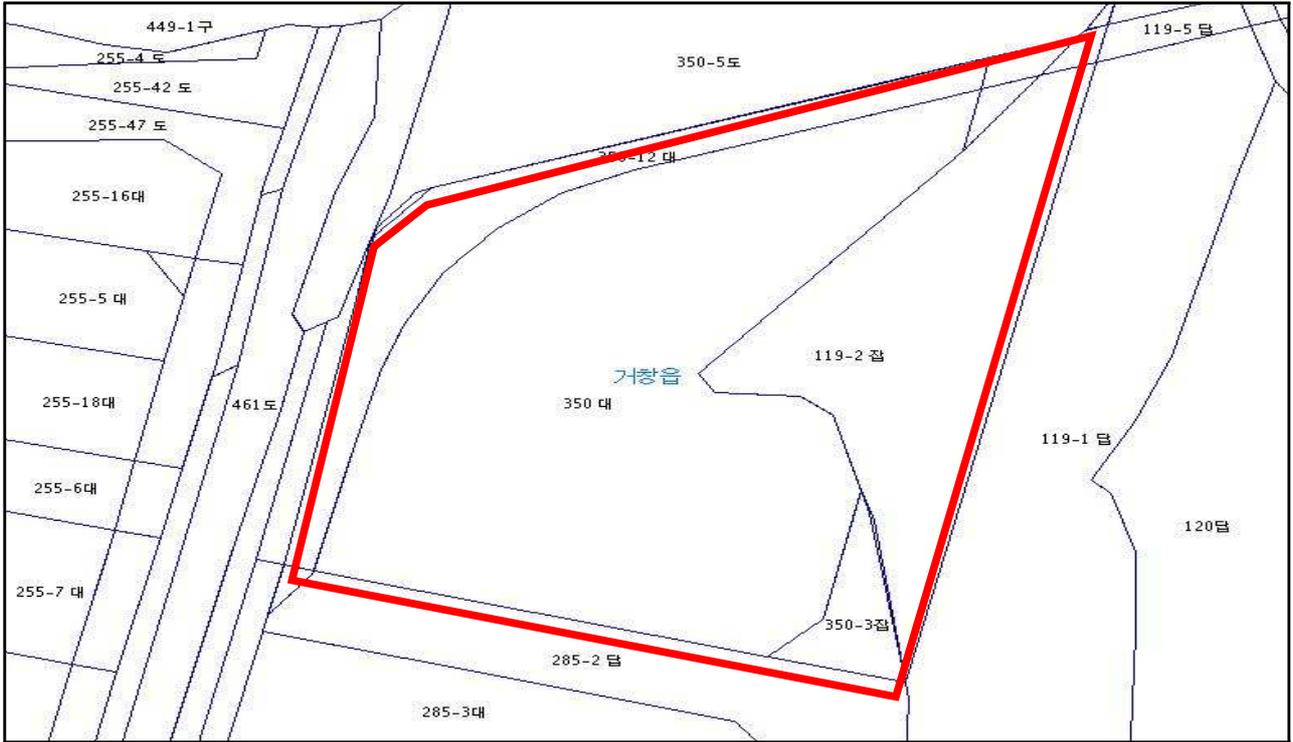


□ 전경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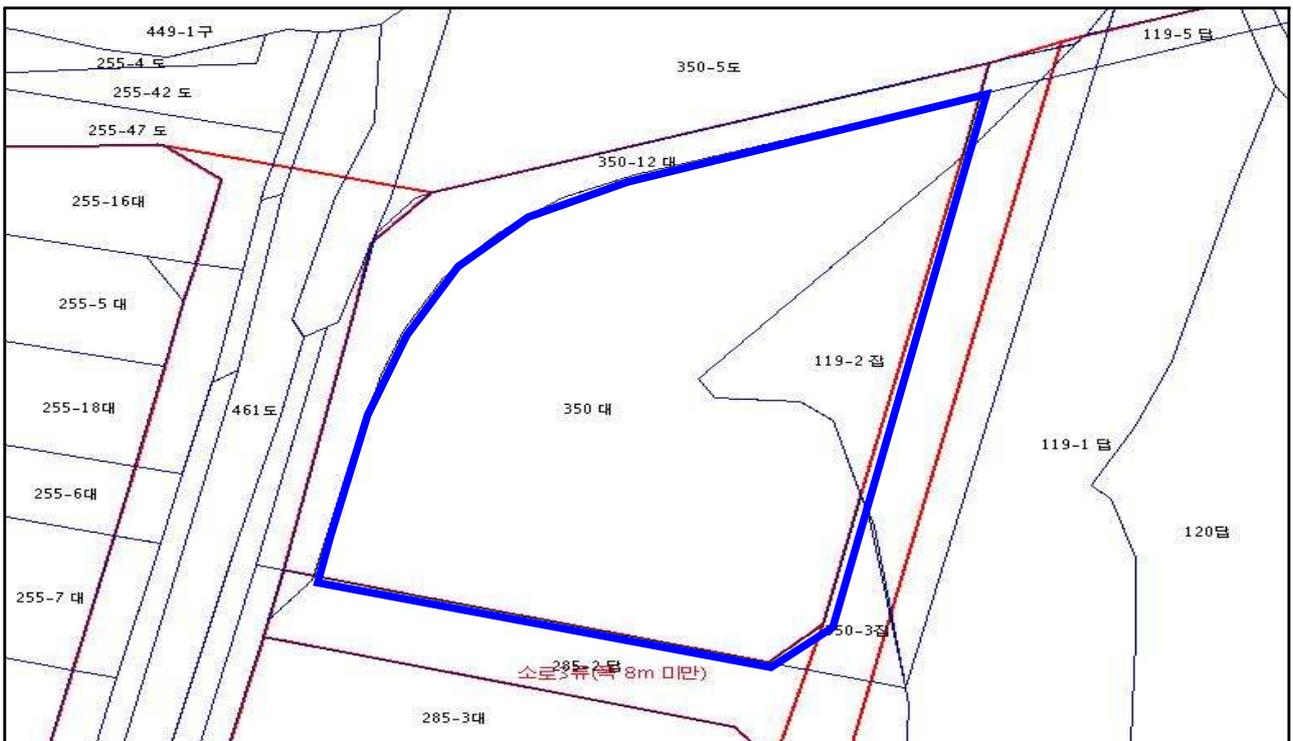


# 지적도(사업부지) 변경사항

□ 당초: 거창읍 김천리 350번지의 3필지/ 3,521m<sup>2</sup>



□ 변경: 거창읍 김천리 350번지의 1필지/ 2,435m<sup>2</sup>



## 나. 가조온천 관광지 활성화사업

### 1) 제안이유

가조온천관광지 안정적인 온천수 공급과 온천지구 입구 방치된 건물 정비로 관광지 활성화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

###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가조온천 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 관리사무소, 온천수 배수지가 위치한 토지는 경상남도로 환지가 되었고
- 시설물은 개인시설로 정리되어 온천수 공급 중에 시설물 소유자와 마찰 시 온천수 공급단절 우려가 예상되고,
- 관리사무소 등 불법건축물을 정리하여 관광지 경관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개선코자 함.

### 3) 취득개요

-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302번지
- 대지면적: 1,117.6㎡ (토지소유자 : 경상남도)
- 사업기간: '17. 01월 ~ '18. 12월
- 사 업 비: 350백만원(군비)
- 주요기능: 온천수 관리

### 4) 재산취득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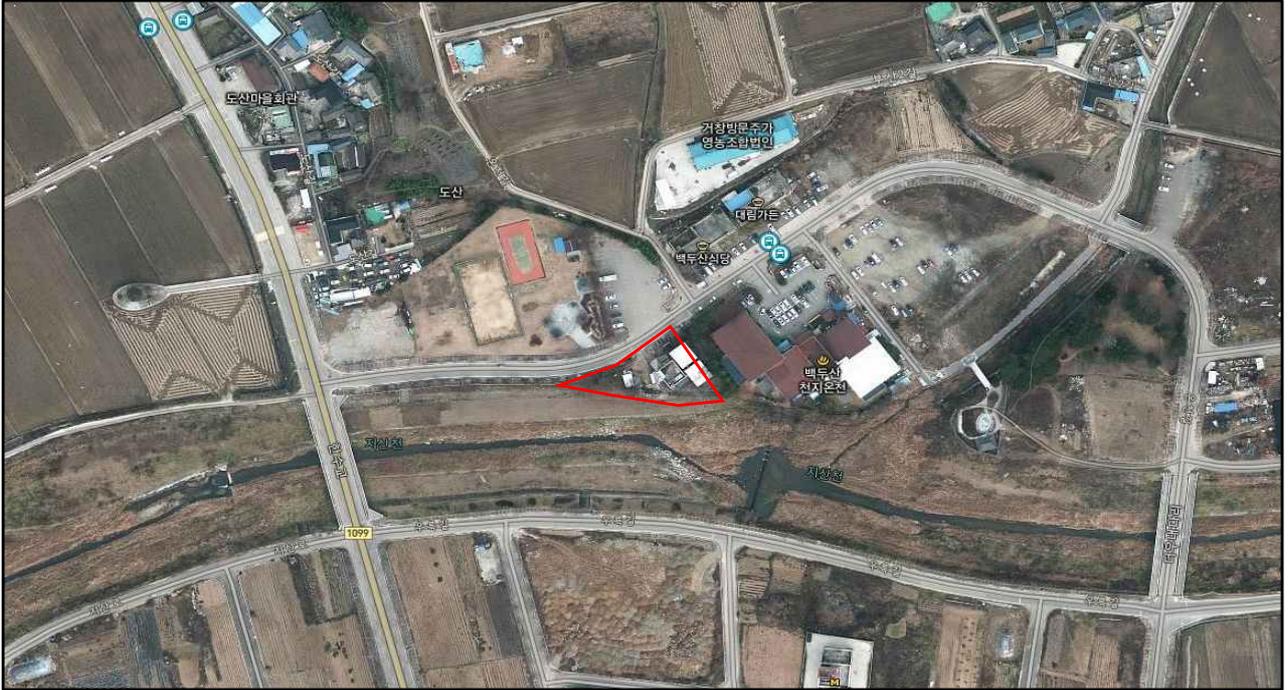
(단위:㎡, 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소재지	지목(용도)	취득면적				
취득	토지	가조면 일부리 1302	잡	1,117.6	134,894,320	2017	가조온천관광지 활성화사업	경상남도

※ 기준가격은 2016년도 공시지가 기준가격임(본 감정평가 시 변동가능성 있음)

# 위치도 및 전경사진

□ 위치도: 가조면 일부리 1302번지



□ 전경사진



###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3조, 제29조, 제31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8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 「관광진흥법」 제3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 4. 검토의견

#### 가. 구)서흥여객 부지 대부 및 매각계획

- 강남·북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호텔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 현재 우리 지역에는 호텔이 없어 국내·외 문화행사 및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 시 어려움이 많아 호텔 유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실정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 사업의 중요성과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업무 연찬과 법적 자문,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나. 가조온천 관광지 활성화사업(부지매입)

- 가조온천관광지 활성화와 안정적인 온천수 공급 및 예상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 토지 매입에 있어 토지 소유자 경남도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한 개인사유 시설물에 대해서도 분쟁 소지가 상당하다고 보여지므로 당사자간 명확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만약 부지 매입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시설물에 대한 권리주장 등 법적 다툼이 예측되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 부지 내 개인 사유의 불법 시설물에 대한 행정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5.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1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2. 제1호 외의 재산: 1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제29조제1항제13호·제19호 또는 제23호에 따라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제26조(계약의 방법) ① 법 제29조에 따라 일반입찰로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9조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 및 같은 조 단서에 따른 지명경쟁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가격평가 방법 외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2. 해당 공유재산을 개발하기 위한 시설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시설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시설

⑥ 제5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 및 절차·방법 등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 : 2017.1.13.] 제26조제5항, 제26조제6항]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이 경우 대부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와 제3항제1호에 따른 대부의 경우에는 제3호의 조건을 추가하여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7.7.>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를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가격으로 매수할 것

제30조(대부기간)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6.7.12.>

3. 제2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장 또는 연구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2016.7.12.>

2. 제29조제5항제3호에 따른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2. 호텔업의 종류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 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라.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마.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 바.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사.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2015.12.10.)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그 설치하는 시설물로 인해 사용용도·목적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②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별표 2>의 내용을 참고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수의계약 장기대부 일자리창출 시설) ① 영 제29조제1항제19호 나목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호텔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온비드)를 이용하여 공개모집 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대부 신청자가 있는 경우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부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부대상자 선정을 위해 제안서 등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구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정량적 평가 (40점)	일자리창출 기여도	해당지역 거주 상시종업원 수	A : 200명 이상 : 20 B : 100명 이상 200명 미만 : 15 C : 50명 이상 100명 미만 : 10 D : 30명 이상 50명 미만 : 5 E : 10명 이상 30명 미만 : 2	20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해당지역 원자재 조달계획	A : 70% 이상 : 20 B : 60% 이상 : 15 C : 50% 이상 : 10 D : 40% 이상 : 5 E : 30% 이상 : 2	20
정성적 평가 (60점)	지역전략산업과의 부합 여부, 수행능력, 실적, 신인도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세부항목을 정하여 ‘선정위원회’ 평가위원이 심사하여 평가함			60

제14조의2 (지역영향평가 대부 시 낙찰자 결정방법) 영 제2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재산을 가격평가 방법 외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부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10 >에 따른다.

## [별표 2]

### 영구시설물 축조 기준 (제7조 관련)

2. 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 만료 시 당해 시설물을 매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대부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특약등기, 공중 등의 안전장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 [별표 10]

### 일반재산 대부 입찰 시 지역영향평가 낙찰자 결정 기준 (제14조의2 관련)

#### 1. 목 적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입찰의 방법으로 대부하는 경우 가격평가 방법 외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적용대상

가.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9호에서 규정하는 시설

1)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2) 관광·문화시설(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4조에 해당하는 시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지방의회 동의 필요)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지방의회 동의 필요)

#### 3. 세부기준

가. 입찰공고, 제안서제출, 계약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한다.

나.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2) 위원회는 공무원(당해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제외) 및 공유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관련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등)로 구성한다.

3)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4)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5) 계약담당자(또는 재산관리 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선정하되 선정된 위원의 참석여부를 우선으로 즉시 확인하여 불참 확인 시 해당 입찰참가자가 다시 추첨하게 하도록 하여 선정한다.

6) 계약담당자(또는 재산관리 담당자)는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위원(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위원 등)을 50% 이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7) 계약담당자(또는 재산관리 담당자)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한다.

8)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별 평가 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다. 제안서 평가

1) 제안서의 평가는 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2)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아래와 같다.

구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급	배점
능력평가 (70)	정량평가 (40)	재무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A: AAA~BBB- 에 준하는 등급 : 10 B: BB+, BB0 에 준하는 등급 : 9 C: BB- 에 준하는 등급 : 8 D: B+, B0, B- 에 준하는 등급 : 7 E: CCC+ 에 준하는 등급 : 6	10
		사업운영 기간	해당 지역 (시도)에서의 관련 사업 운영 기간 A: 36개월 이상 : 10 B: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8 C: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6 D: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4 E: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2	10
		납세실적	법인소득세 연평균 납부실적 A: 5억원 이상 : 10 B: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8 C: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6 D: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4 E: 1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2	10
		상시 종업원수	공고일 현재 고용 중인 상시종업원 수 A: 200명 이상 : 10 B: 100명 이상 200명 미만 : 8 C: 50명 이상 100명 미만 : 6 D: 30명 이상 50명 미만 : 4 E: 10명 이상 30명 미만 : 2	10
	정성평가 (30)	지역전략산업과의 부합 여부, 신인도, 수행능력, 고용창출효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 평가 항목과 배점을 구성 후 평가위원회에서 심사 평가		
가격평가(30)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라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frac{\text{해당입찰가격}}{\text{최고입찰가격}}$			30

3) 능력평가와 가격평가의 비율은 7:3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6:4 또는 8:2로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4) 가격평가와 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또는 재산관리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정량평가의 재무상태 평가 방법은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정량평가의 사업운영 기간, 납세실적, 상시 종업원 수의 평가방법에 있어 신규 창업자의 경우는 입찰 참여자가 받은 점수의 평균점수를 부여한다.

7) 정성적 평가는 선정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8)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라. 낙찰자 결정

1) 제안서 평가 결과, 능력평가 및 가격평가의 점수의 합계가 가장 큰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동일 최고점수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가장 큰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3) 입찰참가자가 1인인 경우에는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 받은 경우에 한해 낙찰자로 결정한다.

